

실행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11. 02. 21

개정 2014. 02. 28

개정 2020. 03. 05

개정 2020. 10. 13

개정 2022. 06. 03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(이하 “수인원”) 정관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한 실행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 선임과 임기) ① 수인원 정관 제32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며, 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.

② 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. 부위원장은 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직무) ① 수인원 정관 제33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
② 수인원 정관 제34조에 따라 위원은 수인원 산하 각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③ 수인원 정관 제40조에 따라 수인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임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이 사직을 신청한 경우

②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거나 수인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한 경우

③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

- 제5조(회의)**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, 전자우편, 영상회의 등으로 결의할 수 있다. 다만 이와 같이 결의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- 제6조(의결정족수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- ② 위원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7조(의사록)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, 위원장이 기명·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보수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